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6243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김AA

2. 유BB

피고, 항소인 이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성

담당변호사 주진영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소1387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정부환, 권오준, 김종수, 여판동, 박금희, 한채연 (이하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급부 의무자로 주장된 당사자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체육관 배드민턴클럽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바(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2) 2013. 11. 24.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원고 김AA와 피고가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그 중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명결의를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1. 29. 이 사건 클럽을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437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클럽은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임시총회,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클럽 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클럽이 서울고등법원(2014나54160)에 항소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위 2014가합5437호 소송의 변론종결 후인 2014. 10. 5.경 이 사건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두었다가,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

들의 얼굴 및 신체가 나온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회의 및 운동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처럼 증거로 사용하였고,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2015. 3. 5. 자 준비서면과 함께 또 다른 원고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얼굴 및 신체를 사진촬영하였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격 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진을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

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sup>1)</sup>,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원고들의 얼굴 등 사진들이 제출된 동기,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에 이 사건 클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

1) 위 대법원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